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자료

목차



1	평생교육사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변천사	04
	평생교육사 과업 및 활동영역	05
2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흐름도	06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07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1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연수	17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18
3	자격증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	19
	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 발급	21
4	자주하는 질문	22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의 현장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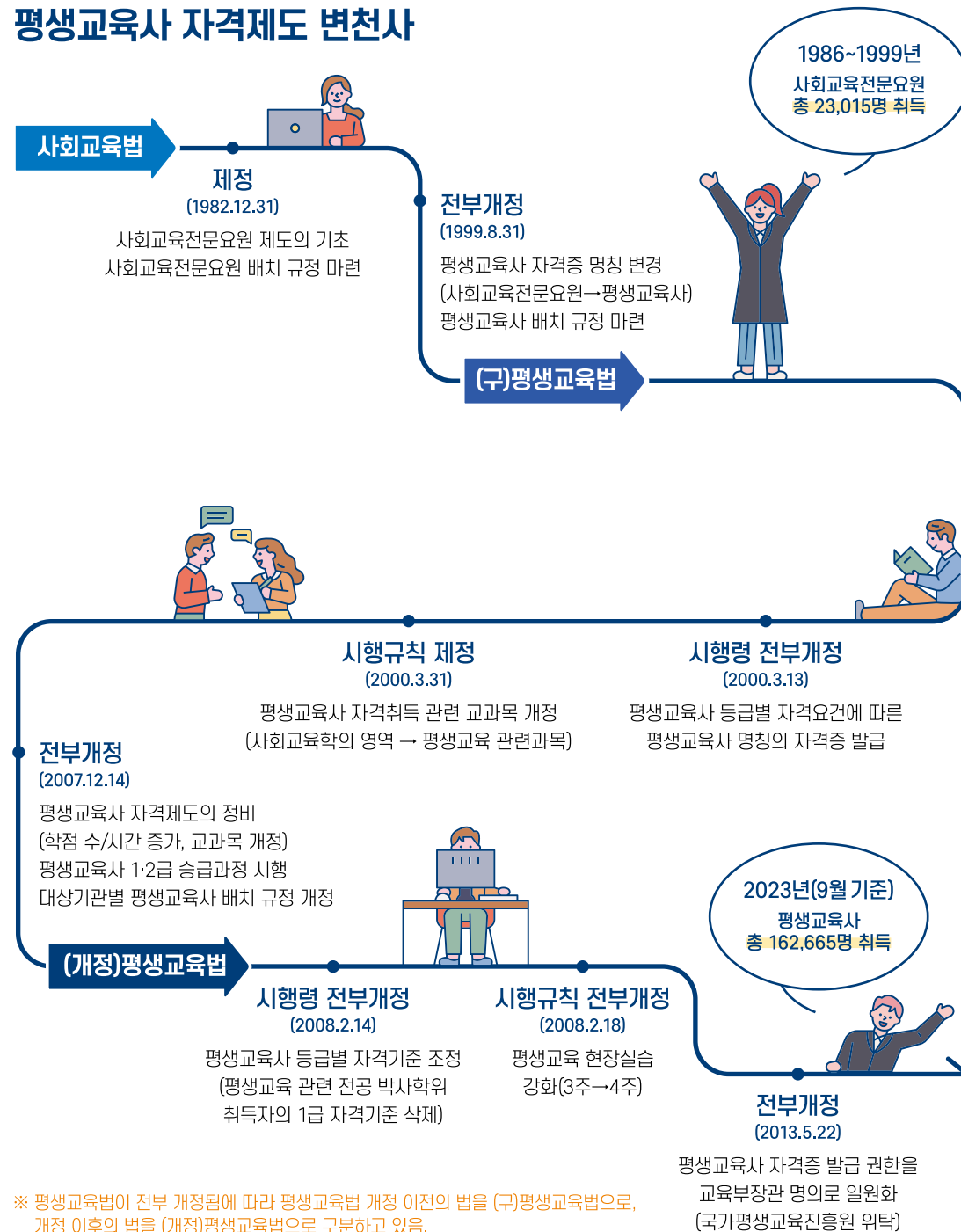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기업 등
우리 가까이에
학습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교육사가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의 동반자로서
평생교육사 양성에 함께합니다.



1 | 평생교육사 안내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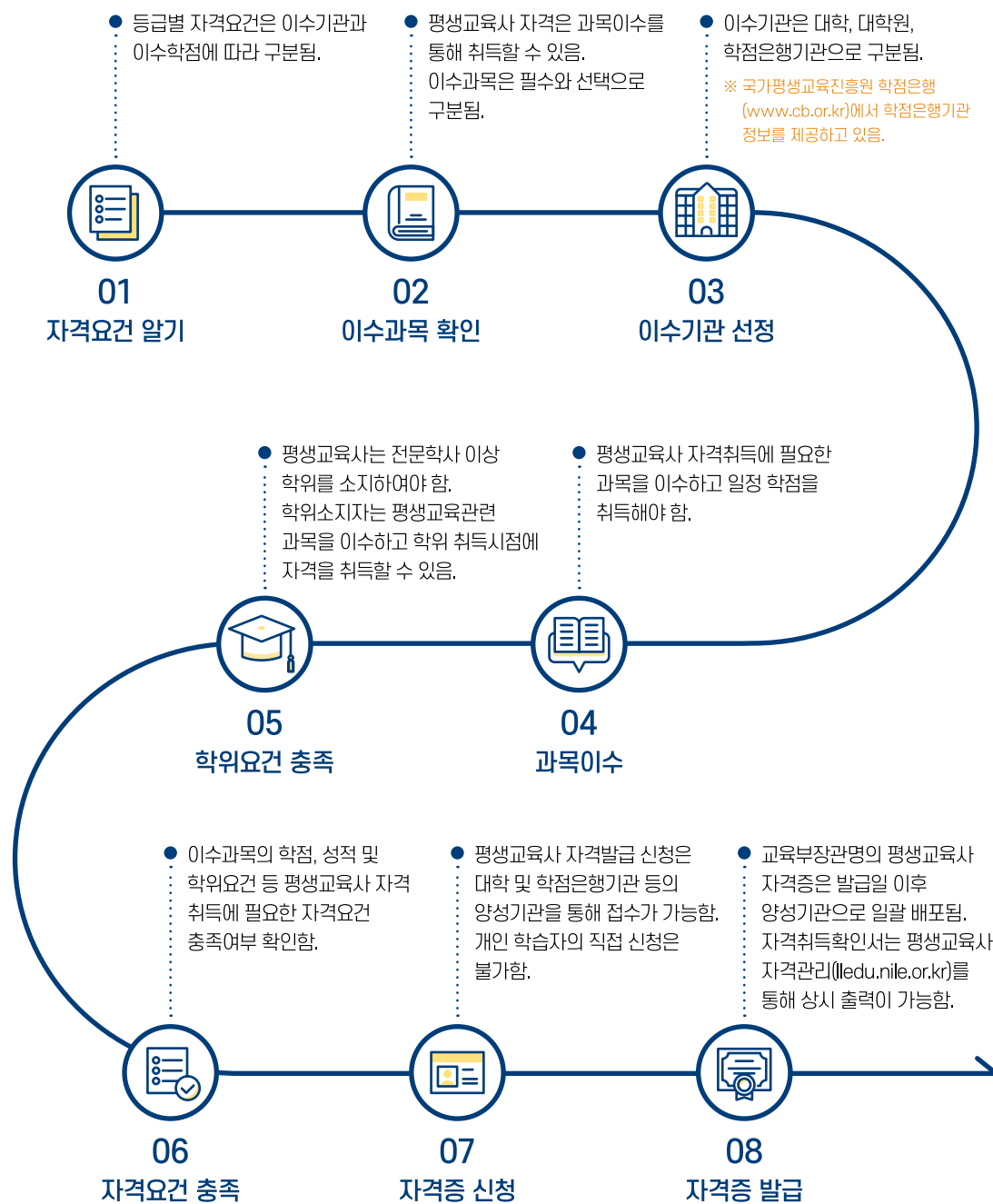
평생교육사 과업 및 활동영역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공공 및 민간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사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서도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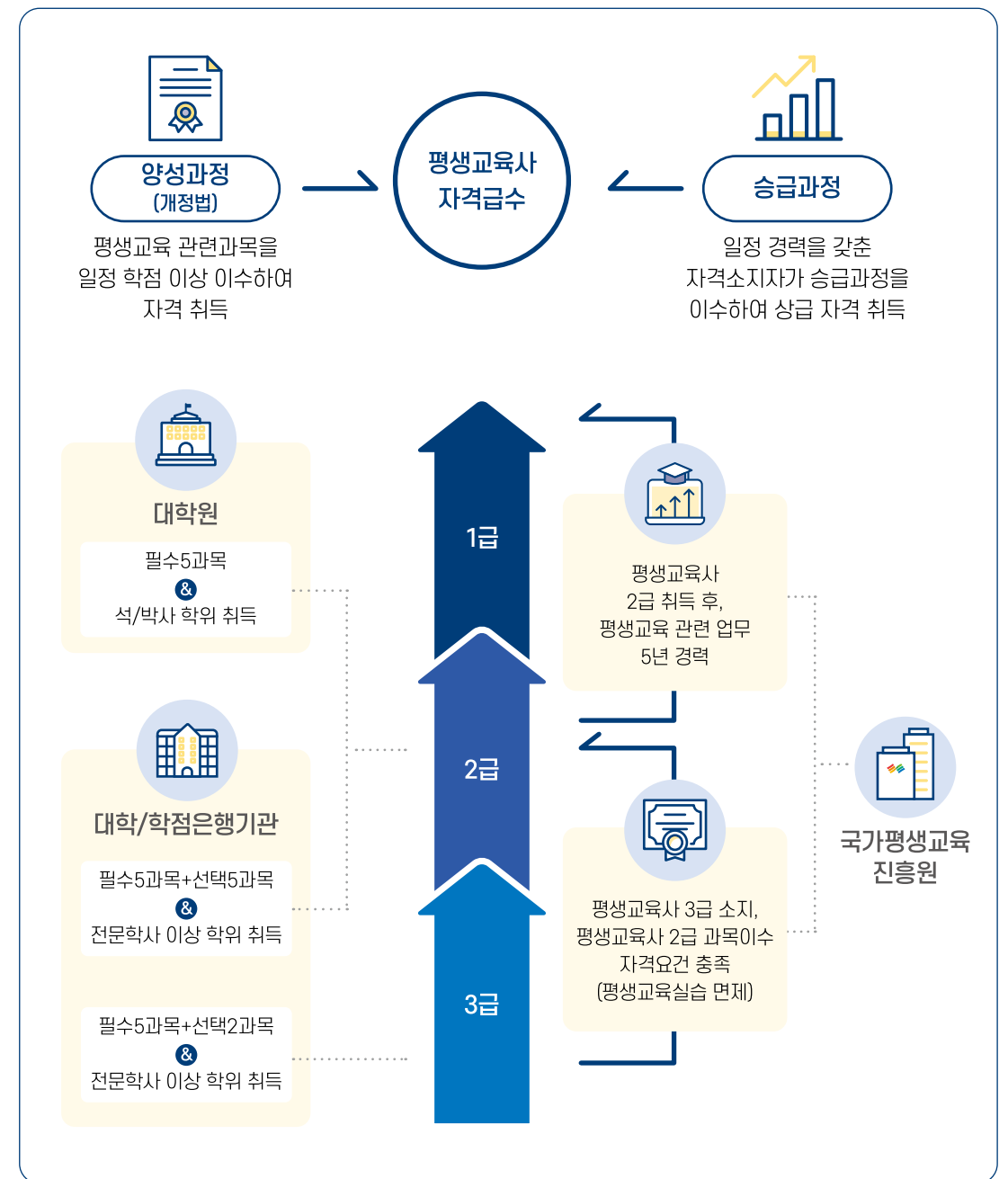


2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흐름도



평생교육사 이수과정



※ 평생교육사 이수과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됨.

○ (개정)평생교육법

- (개정)평생교육법과 (구)평생교육법 적용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방법이 상이합니다.
- (개정)평생교육법과 (구)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2급		
 대학원	1호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학위과정 내에서 대학원 개설 교과목 필수5과목(총15학점)을 모두 이수 후 학위 취득한 경우에 한함.	
 대학/학점은행기관	2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5과목+선택5과목(총30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3호 대학(원) 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5과목(총30학점)
3급		
 대학/학점은행기관	1호 대학 재학생 / 학점은행제 학위과정 수강생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21학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2호 대학(원) 졸업생 /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필수5과목+선택2과목(총21학점)

 (개정)평생교육법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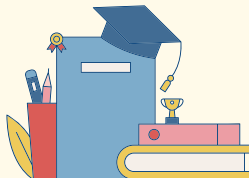
-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이수하여야 함.
-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 평생교육 관련 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지 않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동일과목으로 인정됨.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평생교육 실천영역의 8과목, 평생교육 방법영역의 13과목으로 총 21과목입니다.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포함)	
선택과목	
실천영역	노인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시민교육론,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청소년교육론, 특수교육론
방법영역	교수설계,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교육사회학, 교육조사방법론, 기업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상담심리학,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진로설계, 환경교육론

- ※ 평생교육사 2급은 선택과목 5과목, 3급은 2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 선택과목은 실천영역과 방법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함.



○ (구)평생교육법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1급		
 대학원	2007년까지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하여 평생교육 관련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평생교육 관련전공: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전공	
2급		
 대학원	1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원 재학생 필수7과목(총14학점) ※ 대학원 개설 교과목에 한함	
 대학	2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 학사학위취득	3호 2008년까지 입학한 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전문대학	4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8과목(총30학점) & 전문학사학위취득	5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8과목(총30학점)
3급		
 전문대학	1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재학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 전문학사학위취득	2호 2008년까지 입학한 전문대학 졸업생 필수7과목+선택3과목(총20학점)

(구)평생교육법 과목 이수 시 유의사항

- ☑ 과목당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도 자격증 신청 시 각 2학점으로 산정하여 인정됨.
- ☑ 이수과목의 백분위 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전체 이수과목 성적 총합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cb.or.kr)에 학점인정신청 및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학점은행제 콜센터 ☎ 1600-0400)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사 관련과목

입학연도 및 이수한 과목에 따라 졸업생은 재학 당시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을 일부라도 이수하였다면 (구)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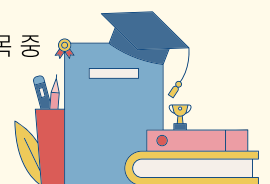
필수과목	선택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방법론(산업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경영학개론, 기업교육론 노인교육개론, 산업복지론 여성교육개론, 장애인교육개론 지역사회교육론, 직업과 윤리 청소년교육개론, 환경교육론

과목2*(~2002년 2월 이전 이수한 과목에 한해 인정)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노인심리학, 노인학, 농촌사회학, 도서관학, 도시사회학,
레크리에이션지도(또는 레크레이션지도), 박물관학,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교육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법규(론),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통계(학), 사회교육학, 사회교육행정론, 사회복지론,
사회사업론, 사회심리학, 사회정책, 사회조사방법, 사회학개론, 산업교육과정론,
산업교육론, 산업사회학, 산업심리학, 상담심리학, 성인·청소년지도, 성인심리학,
아동심리학, 여성학, 인력개발론, 조직이론, 지역사회개발론,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직업교육방법, 직업기술교육, 직업윤리, 청년심리학, 평생교육론

* 과목2는 구법의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

- ☑ (구)평생교육법과 (개정)평생교육법은 혼용하여 적용되지 않으니, 관련과목 이수 시 각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추가로 과목을 이수할 경우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중 인정가능한 (구)평생교육 관련 과목만을 이수하여야 함.
- (개정)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인 '교육사회학', '상담심리학' 등을 새롭게 이수하여도 (구)평생교육법 관련 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구)평생교육법 대상자가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행 학습과목

(구)평생교육법 적용자가 학점은행기관을 통해 (구)평생교육법 관련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분류	(구)평생교육 관련과목	(개정)평생교육 관련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원격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성인학습 및 상담
선택과목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노인교육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학점은행 개설 예정과목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개설 예정과목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 조회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

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조회 방법

이수한 교과목명이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edu.nile.or.kr) ▶ 유사과목 인정교과목 조회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은 현장실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어 오리엔테이션, 현장실습과정과 내용,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 등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을 이해하는 교과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이해, 업무 분석, 기관 운영 프로그램 분석과 모의 프로그램 기획 등 실질적인 평생교육실습과 다양한 실습 후 활동(실습평가회, 향후 비전 세우기 활동 등)을 통해 예비 평생교육사로서의 실무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이기도 합니다.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기준

구분	구법	개정법
시간	3주 120시간	4주 160시간
내용	실습기관의 근로환경과 동일한 여건 하에서 실습하는 것을 전제로,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 ※ 점심 및 저녁 등의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 ※ 현장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주말도 실습 가능	
기타	평생교육실습은 과목 형태로 이수하지 않고,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평생교육실습은 과목 형태로 수강 신청 후 실습기관을 통해 진행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이수요건

교과목 이수요건

현장실습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실습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 대학 및 기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4과목 이수
※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 학점은행기관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포함.
- 대학원: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한 필수과목 3과목 이상 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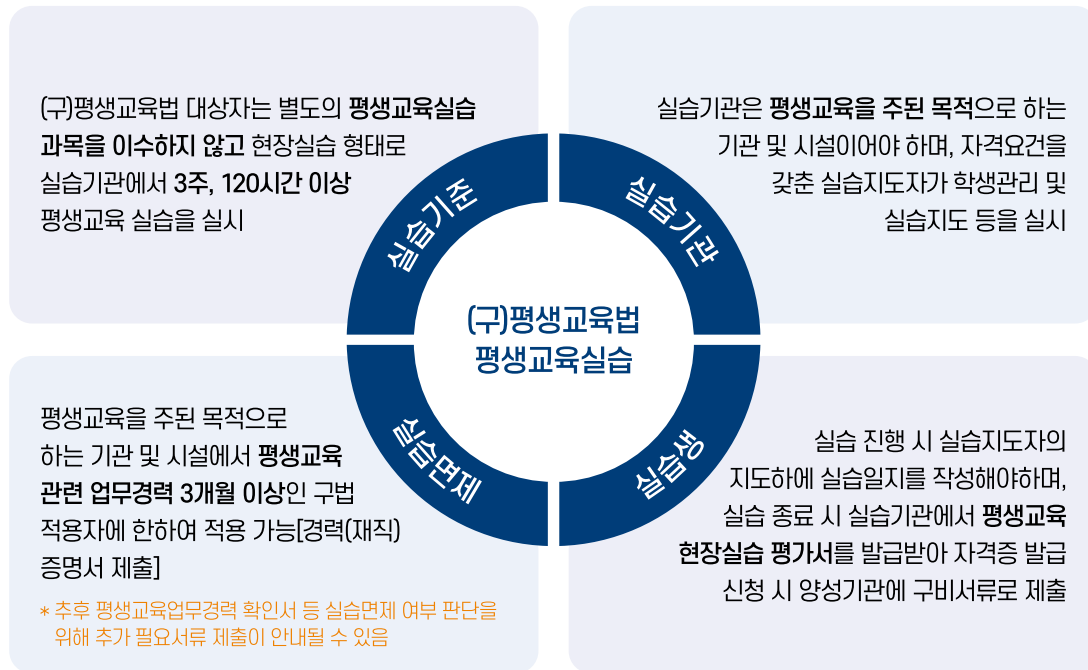
현장실습 이수요건

-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으로 편성된 실습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교과목의 성적 산출 및 학점 부여 이전에 종료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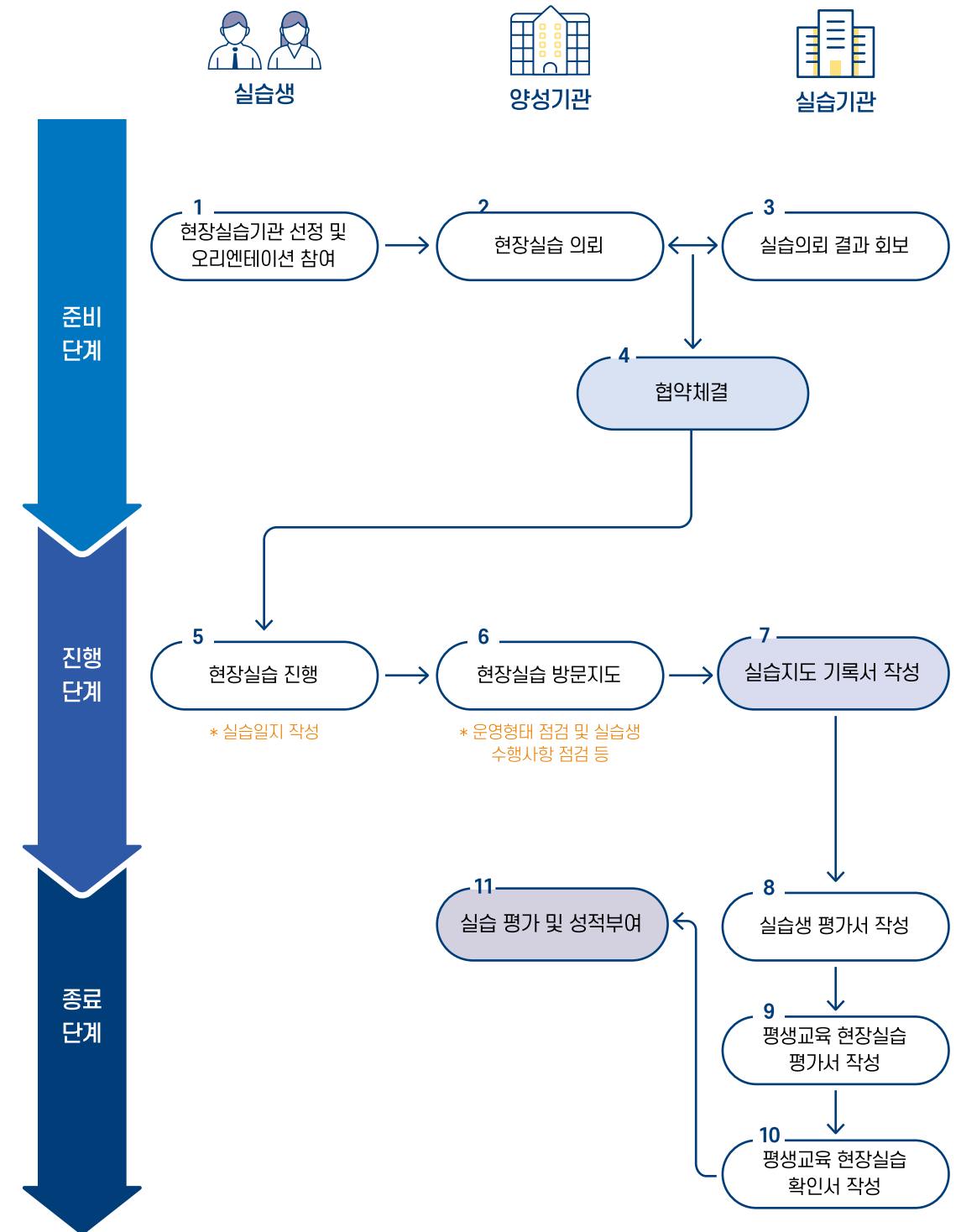
(개정)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구)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실습



○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운영절차



○ 평생교육사 실습담당교수·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및 주요역할

구분	실습담당교수(양성기관)	실습지도자(실습기관)
자격요건	• 평생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평생교육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 평생교육 관련 학위: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는 전공분야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학** 전공 ** 단, '교육학' 관련 학위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해당 경험(석사: 3년, 박사: 2년)이 있는 자 이어야 함.	•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2년 이상 종사자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3년 이상 종사자 * 관련업무 경력은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인정됨.
주요역할	• 현장실습 기획과 평가 • 현장실습 세미나 실시 • 현장실습 모니터링 • 현장실습 평가·피드백 • 현장실습 평가회 실시 • 실습생 최종 평가·학점 부여	• 실습희망자 사전 면담 • 실습허가·오리엔테이션 • 양성기관과 실습협약 • 현장실습 실시 및 관리 • 현장실습 평가서 작성 •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 현장실습 인정범위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재직기관)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직장(현장)체험/사회봉사 등 단기체험활동 또는 인턴(단기근로자 형태)을 수행하는 경우
 -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사 역량강화 연수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사 승급과정과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연수대상자: 평생교육시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자격소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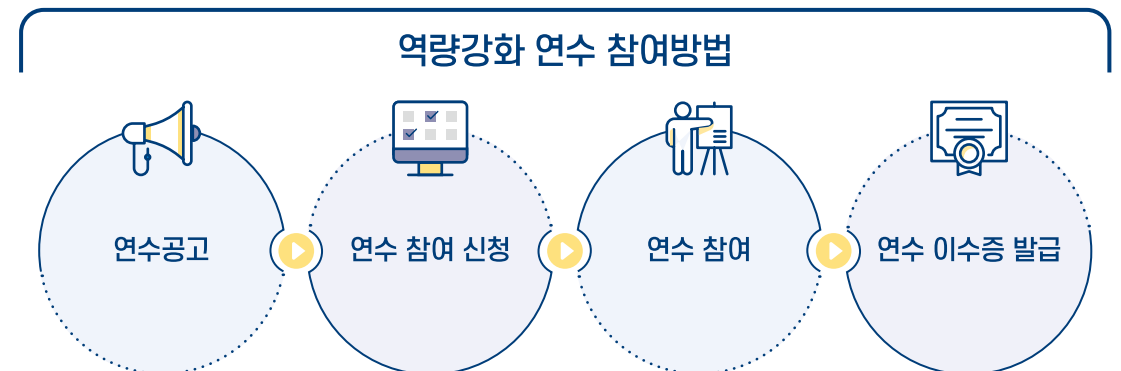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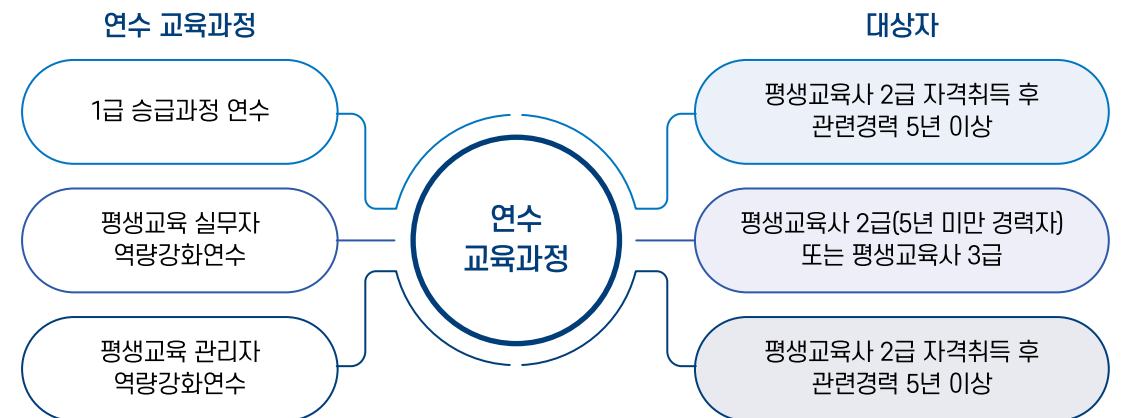
○ 법적근거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6조(평생교육사의 등급 등)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1의3과 같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8조(이수과정)

-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이수과정은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으로 구분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과 승급과정의 운영을 진흥원 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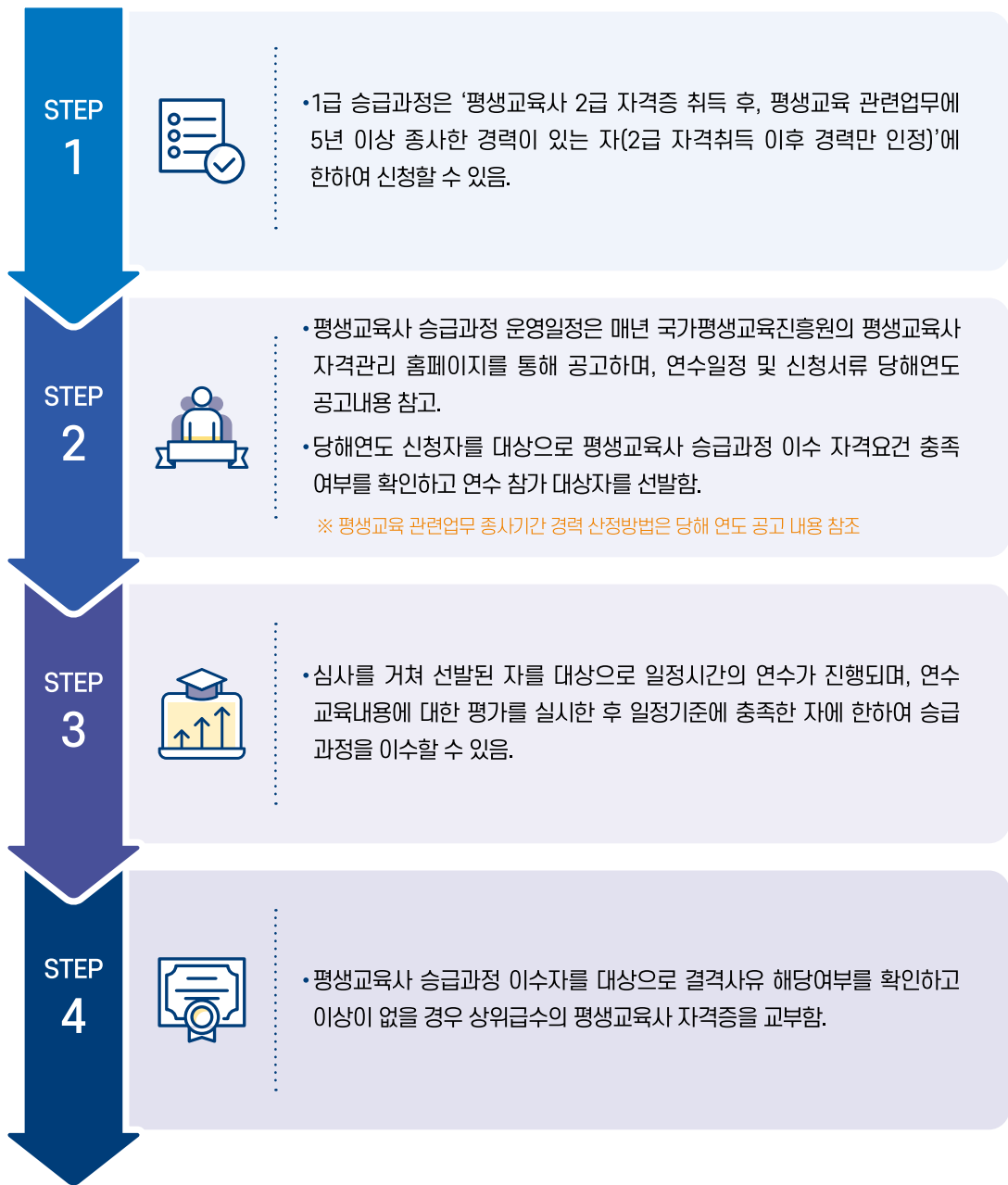
※ 역량강화 연수공고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edu.or.kr) 공지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운영 절차

평생교육 관련 업무 경력은 '평생교육 경력산정표' 기준을 적용하여 경력을 산정함

-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 자료실 ▶ 자격취득 관련 자료 참조
- ※ 공고 상세 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매년 4월 말 예정, 연 1회)



3 | 자격증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일정

신청대상

자격증 신규 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

※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양성기관에 문의

신청기간

연 4회(분기별 1회)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edu.nile.or.kr) 공지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방법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한 기관을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graph LR; A[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br/>(양성기관 접수일정 내<br/>서류 제출 완료)] --> B[신청서류 검토 및<br/>신청자격 확인]; B --> C[자격증 발급<br/>신청]; C --> D[신청접수 및<br/>자격요건 검정]; D --> E[자격증<br/>제작 및 교부];
```

신청자 **이수(양성)기관(대학/학점은행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대학의 시간제 과정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이수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 신청 및 인정처리가 완료되어야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양성기관(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등)의 접수 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하여 신청자 서류 접수
- ※ 신청자의 편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자격발급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발급을 위한 세부일정 및 안내사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ledu.nile.or.kr) 홈페이지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공고사항 참조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상 학점인정을 받아야 자격취득 학점으로 인정 가능함.
	기본증명서(일반) 1부	개명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개명·성분변경 제출 (상세유형도 제출 가능)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1부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는 제외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1부(양성기관 보관용)	양성기관 양식으로 변경하여 활용 가능
해당자별 추가구비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및 강의계획서 각 1부 (기인정 유사과목은 제출 불요)	대학에서 법령상 평생교육 관련과목과 유사한 과목을 이수한 자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자 - 시간강사 및 단시간 근로자는 총 근무시간 및 주당 근무시간이 모두 확인되어야 함.
	외국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대학 학위취득 확인 관련 서류 1부 - 대학 학력인정 확인 관련 서류 1부 -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공증서류 1부 (또는 행정사법에 따른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문 및 번역확인증명서 각 1부)	신청기관 담당자가 '외국학위 취득 사실 확인 관련 서류' 원본 확인하고 '원본대조필'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외국인(외국 국적자) 관련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 - 국적증명서(여권사본 등) 1부	

자격증 재발급 및 전환 발급

평생교육사 재발급 신청



신청대상

...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

※ 재발급 사유
분실 / 훼손,
성명 정정,
주민등록번호 정정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자격증 전환 신청



신청대상

...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을 평생교육사 자격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

※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 평생교육사 2급으로 전환 발급 가능
사회교육전문요원 2급
→ 평생교육사 3급으로 전환 발급 가능

신청기간 및 교부기한

신청기간

상시

교부기한

신청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통상 10일 이내 (단,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 완료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로그인(lledu.nile.or.kr)

▼

자격증 재(전환)발급 클릭하여 신청

자격증 조회 방법

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급수 입력 후 검색

▼

기취득 자격증 선택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파일로 첨부

성명 정정 시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초본 1부)

4 자주하는 질문



Q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가요?

A | 평생교육사는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여야 자격취득이 가능함. 학위 미소지자는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위 취득 이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함.

Q | (구)평생교육법 대상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A | [구법] 적용대상자(구)평생교육 관련 과목 운영 적용
 - '09년 3월 이전 대학에 입학한 졸업(예정)생, 자퇴생, 제적생
 ※ 졸업생, 자퇴생, 제적생은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던 자이어야 함.



Q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학습자 개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에 개인 신청은 불가함.

개인은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양성기관(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으로 자격증 신청서류를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함.

Q |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 교육부장관명의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양성기관으로 일괄교부됨(우편발송). 개인 학습자 수령방법은 양성기관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함.



Q | 온라인 상담 신청 및 답변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 → [오른쪽 배너 중 사이버상담실] 혹은 하단에 [사이버상담실]을 클릭하거나,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상담내역]을 통해 상담접수 및 답변을 확인할 수 있음.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lledu.nile.or.kr



1577-3867



국가평생교육진흥원